

재취업 활동 계획서

1. 수급자격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수급자격 신청일자		실업급여수급기간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일자		휴대전화	010 -
퇴직시 직종		보유 자격증	

2. 취업, 창업 계획

2-1. 취업희망()

취업희망직종①		취업희망직종②		취업희망직종③	
희망근무지역①		희망근무지역②		희망근무지역③	
희망임금수준		근무형태	정규직(), 계약직()		

2-2. 자영업, 프리랜서 등 창업희망()

창업업종		창업예정시기	
창업예정지역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희망	
창업준비활동			

3. 고용센터 제공(참여 희망) 희망서비스 (희망사람만 체크)

희망시기	수급기간중 계속 희망(), 수급종료 시점 희망()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만 제공(), 취업알선 희망()		
직업훈련 정보	(훈련직종)		
잡케어 참여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금융상담 필요		복지상담 필요	

4. 재취업 활동 계획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계획하고 있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회차	취업활동계획
2차 실업인정일	
3차 실업인정일	
4차 실업인정일	
5차 실업인정일	
6차 실업인정일	
7차 실업인정일	
8차 실업인정일	
9차 실업인정일	

* 작성방법

-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로 작성
- (3차 이후)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제출, 면접예정, 직업훈련 수강 등 구체적인 취업 활동계획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 직원의 직업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며,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11 10 10

수급자 이름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이름 (서명 또는 인)